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번호	14820
----------	-------

제출연월일 : 2025. 12. 3.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산 및 유통·판매단계 농수산물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폐기, 용도 전환, 출하 연기 등의 조치를 하게 함으로써 유통되는 농수산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으나, 안전성조사를 수행하는 안전성검사기관에 대한 농수산물 안전관리 공무원의 출입·점검·조사 권한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현장조사에 어려움이 있는바, 안전성검사기관에 대한 농수산물 안전관리 공무원의 출입·점검·조사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등에는 해당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안전성검사기관이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에 관한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안전성검사기관의 검사업무 범위, 검사방법, 검사기간 등 준수사항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며,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4항 본문 중 “3년”을 “4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1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안전성검사기관이 같은 항에 따라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 대행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에 관한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⑧ 안전성검사기관은 검사업무의 범위, 검사방법, 검사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성검사기관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전성검사기관에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 등을 출입하여 시설을 점검하고 관계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⑩ 제9항에 따른 출입·점검 또는 조사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조사 등의 목적, 기간과 장소, 관계 공무원 성명과 직위, 범위와 내용 등을 조사 등의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본문의 사항 등이 기재된 서류를 조사 등의 대상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⑪ 안전성검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9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 명령 및 출입·점검·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⑫ 제9항에 따라 출입·점검 또는 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64조제13항(중전의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및 업무 범위, 제3항에 따른 변경의 절차, 제6항에 따른 재지정 기준·절차, 제7항에 따른 결과 제출 기한·절차, 제9항 및 제1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권한·직무범위 및 증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명할”을 “명하거나 시정명령을 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검사성적서”를 “결과통보서”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64조제7항에 따른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5. 제64조제8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64조제9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점검·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7. 제64조제1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제68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잔류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협의를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제64조제6항에 따른 지정을 포함한다)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4조(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 ③ (생 략)	제64조(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u>3년</u> 으로 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 ----- ---- <u>4년</u> -----.
⑤ · ⑥ (생 략)	⑤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제1항에 따라 <u>지정을 받은 안전성검사기관이 같은 항에 따라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 대행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에 관한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신 설>	⑧ <u>안전성검사기관은 검사업무의 범위, 검사방법, 검사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u>
<신 설>	⑨ <u>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성검사기관의 관리 ·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u>

<신 설>

는 안전성검사기관에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 등을 출입하여 시설을 점검하고 관계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⑩ 제9항에 따른 출입·점검 또는 조사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조사 등의 목적, 기간과 장소, 관계 공무원 성명과 직위, 범위와 내용 등을 조사 등의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본문의 사항 등이 기재된 서류를 조사 등의 대상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⑪ 안전성검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9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 명령 및 출입·점검·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⑫ 제9항에 따라 출입·점검 또는 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업무 범위, 제3항에 따른 변경의 절차 및 제6항에 따른 재지정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65조(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4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내준 경우
4.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성검사에 관한 규정을 위

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및 업무 범위, 제3항에 따른 변경의 절차, 제6항에 따른 재지정 기준·절차, 제7항에 따른 결과 제출 기한·절차, 제9항 및 제1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권한·직무범위 및 증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65조(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

----- 명하거나 시정 명령을 할 -----.
-----.

1. 2. (현행과 같음)
3. 결과통보서-----
--
4. 제64조제7항에 따른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

<u>반한 경우</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② (생 략) 제68조(농수산물의 위험평가 등) ① ~ ③ (생 략) <u><신 설></u> ④ (생 략)	<u>로 제출한 경우</u> 5. 제64조제8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64조제9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점검·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7. 제64조제1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현행과 같음) 제68조(농수산물의 위험평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잔류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협의를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안 제68조제4항 (농수산물의 위험평가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잔류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협의를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68조제4항 (농수산물의 위험평가 등)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현재 잔류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 잔류조사: 농수산물의 과학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수산물에 잔류하는 유해물질 실태 조사
 - ** 25년 농수산물 대상 유해물질(잔류농약, 식중독균,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등) 조사 실시(610백만원)
- 개정안 제68조제4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잔류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계부처 소관 분야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사전협의를 거쳐 요청할 수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잔류조사 협조를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잔류조사 실시를 위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잔류조사 대상 품목, 물질, 조사 규모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나, 잔류조사 사전협의 전까지는 이에 관한 정보를 확보하기 곤란하여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Ⅲ. 부대의견

○ 해당없음

Ⅳ. 작성자

○ 성명

주무관	사무관(서기관)	과장	실장·국장
박은령	송현숙	정윤채	김현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송현숙	043-719-3204	dream2040@korea.kr

* 주된 작성자의 연락처를 기재